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(안 제8조)

- 10만원 ⇒ 15만원

나. 국가보훈대상자 신설(안 제8조제4호)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다. 수당의 지급제외 규정 수정(안 제10조)

- 수당 지급대상자가 안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

라. 조문 일부내용 및 서식 개정

(안 제8조, 제11조,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[“자(者)” ⇒ “사람”]
-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성별구분란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10. 27 ~ 11. 16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,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, “수당을 받는”을 “해당”으로, “사망할 경우에는”을 “사망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1호 중 “따른 보상을 받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”를 “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제외)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”를 “제8조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수당을 환수하여야”를 “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”로 하고, 같은

항 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, “수당을 받은 경우”를 “지급받은 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환수할”로, “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”를 “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보훈(참전)등록번호						
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						처리기간
						30일
신 청 인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우편번호 : □□□□□□ 강원도 평창군 읍·면 (전화번호)				
예금 계좌	금융기관명			예금종류		
	계좌번호			예금주성명		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
20 년 월 일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평창군수 귀하						
구비서류 : 1.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	수 수 료	
					없 음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<u>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영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고, <u>수당을 받는</u> 국가보훈대상자가 <u>사망할 경우에는</u>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.</p> <p>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<u>따른 보상을 받는 자</u>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</u></p> <p>3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<u>해당하는 자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----- -----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 - <u>15만원</u>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<u>사망한 때에는</u>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제4조에 해당</u> <u>하는 사람</u></p> <p>3. ----- ----- <u>해</u> <u>당하는 사람</u></p> <p>4. 「<u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에 <u>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p>

제10조(수당지급의 정지 등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8조, 제39조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8조,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수당의 환수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
2.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3. 착오 지급된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제외)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1조(수당의 환수) ① -----
제8조-----
- 사람이 -----
----- 그 수당
을 되돌려 받아야 --.

1. 거짓 -----
지급받은 때
2.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
3. ----- 때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환수할 -

----- 제76조에서 정한
바에 따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 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 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 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- ② ~ ③(생략)

□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

제12조(보상금) ① 보상금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한다.

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(先順位者)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,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5.21.>

1.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
2.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

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4.5.21.>

1.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,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

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삭제 <2015.12.22.>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

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(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9.15., 2012.2.17.>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
2.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4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
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1.9.15.>

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4·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)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1.9.15., 2012.2.17.>

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「통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(告示)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보상금은 월액(月額)으로 하고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

-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 10만원을 15만원으로 상향조정

○ 관련조문

- 제8조(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영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과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기존 1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5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 하고 현 지급대상인원 590명으로 계산

나. 추계 결과

- 현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: 590명
- 보훈영예수당 (연간) : 590명 × 150,000원 × 12개월 = 1,062,000,000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군 자체수입(지방세 수입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명 기
연락처	(033) 330 - 2150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1,062,000	1,044,000	1,026,000	1,008,000	990,000	5,130,000
보훈영예수당		1,062,000	1,044,000	1,026,000	1,008,000	990,000	5,130,000
재원 조달		1,062,000	1,044,000	1,026,000	1,008,000	990,000	5,13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062,000	1,044,000	1,026,000	1,008,000	990,000	5,130,000
	지방세	1,062,000	1,044,000	1,026,000	1,008,000	990,000	5,13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